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구자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9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구자근 · 권영세 · 유상범

강대식 • 박준태 • 인요한

박덕흠 • 김성원 • 김선교

김도읍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」이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하여 노후거점산업단지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 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2 제72호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 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368호)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2.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